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2018. 1.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보조금 관리 현황	2
1. 국고보조금 개요	2
2.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문제점	4
III.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7
1.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8
2.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12
*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사례]	14
3. 부정수급 점검 강화	15
4. 신고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	18
IV. 향후 계획	19
[참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세부실행계획	21

I. 추진 배경

- 최근 2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부정수급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조치 현황

('13년) 75건 → ('14년) 293건 → ('15년) 355건 → ('16년) 286건 → ('17년) 284건

-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17.10월)*발생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 국무총리,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 점검 지시 (17.10.31, 제46회 국무회의)

◇ (제46회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 말씀)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람. 이번에 흉악한 범죄들의 빈발은 그것대로 경찰과 검찰이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 차제에 바로잡아 주셨으면 함. 총리실도 총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람.

-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쏠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

*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17.11.21~30)

**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17.11.17, 12.5)

II. 보조금 관리 현황

1 국고보조금 개요

□ 국고보조금 현황

- (개념)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예산·기금을 활용하여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원
 - * 보조금관리법 제2조 : ‘보조금’이란 국가 외에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한 자원
- (현황) ‘18년 국고보조금(66.9조원) : 자치단체보조 50.2조원, 민간보조 16.8조원

(자치단체 보조; 50.2조원)		(민간보조; 16.8조원)	
·경상보조 35.9	·자본보조 14.3	·경상보조 15.2	·자본보조 1.6

< 최근 5년 간 국고보조사업 현황 >

		’13	’14	’15	’16	’17	’18
전체	규모(조원)	50.6	52.8	60.4	61.2	61.2	66.9
	세부사업(개)	2,552	1,904	1,956	1,591	1,637	1,569
(민간 보조)	규모(조원)	12.7	12.6	14.4	14.5	13.5	16.8
(지자체 보조)	규모(조원)	38.0	40.2	46.0	46.7	47.7	50.2

* ‘18년도는 예산기준, ‘17년도는 추경·기금변경분이 반영된 예산현액(’17.12월) 기준, ‘13~’16년도는 결산 기준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보조금이 37.8조원(56.5%)으로 가장 크고, 농림수산 8.4조원(12.6%), 환경 4.5조원(6.7%), SOC 4.4조원(6.6%) 등의 순

< ’18년 분야별 보조금 >

	합계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SOC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기타
규모(조원)	66.9	37.8	8.4	4.5	4.4	4.1	3.0	4.7
비중(%)	100.0	56.5	12.6	6.7	6.6	6.1	4.5	7.0

□ 그간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

○ 복지분야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13.12월 발표)

- '13.8월,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고 부정수급 점검·단속결과 (13.8~12월) 등을 검토하여 복지사업 단계별 대책 마련

* 국무2차장 주재, 기재부·교육부·복지부 등 11개 부처, 보사연·행정연 등 참석

- 복지사업 3단계별 맞춤형 대책 마련,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운영(권익위) 등

- (대상자 선정)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장애·요양 등 판정절차의 정확성 확보,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 (서비스 공급·이용)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 차단,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청구 방지(실시간 결제 도입 등) 등
- (사후관리) 자격변동·상실 정보의 적기 반영, 보험료·환수금 등 징수 강화

○ 전체분야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4.11월 발표)

- '13년 복지 분야 부정수급 대책에 이어 비복지 분야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 부처별 자체실태점검('14.4~6월), 행정연구원 연구용역('14.8월) 등을 통해 대책 마련

-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운영, 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등

* 기재부 2차관(위원장), 복지·농림 등 13개 부처, 학계 등 민간위원 12명

- (심사·평가 강화) 100억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국고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등
- (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의무화, 부정수급 벌칙 강화(5배 징벌적 과징금, One-Strike Out) 등
- (사후관리 개선)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위탁정산 의무화 등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등

□ 점검 개요

- (서면점검) '17.11.21~30(10일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실태를 점검

- * 점검항목 : ①기관별 보조사업 및 부정수급 파악 실태(사업수·규모)
②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조직 구성·운영 실태
③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속 및 환수 현황
④현행 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 (관계부처 회의) 보조사업 관련 주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현행 보조금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필요사항 등 논의

- *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권익위, 경찰청, 부패예방감시단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

◆ 그간 두 차례 종합대책 추진으로 보조금 관리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

- * △보조사업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일원화된 신고체계 마련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등 벌칙 강화

⇒ 그러나, ①관리 제도와 시스템 측면에서 일부 미비점이 드러나고, ②현장의 집행·점검 등 측면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견

제도 및 시스템 측면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검증기능 보완 필요

- 부정수급 검증시스템을 갖춘 e나라도움 개통('17.7월)으로, 보조금 중복수급, 무자격사업자 등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 부정수급 정보* 입력을 통한 DB 구축과 검증프로그램의 보완, 부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 필요

- * 부정수급 확정 내역, 부정수급자 명단 등 부처별 관련정보 입력을 통해 부정수급 검증프로그램의 유의성 확인 필요

- 현재 다양한 공적자료*가 연계되어 있으나, ‘어금니 아빠’ 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해서는 일부정보의 추가 연계 필요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개인 건강보험 자격정보 등

※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로,

→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특히 금융거래 내역정보 등이 연계되어 있었으면 적발 가능

②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미흡

- (소관부처) 보조사업 소관부처 36개 중 일부 부처만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보조금 법령상 재량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조사업 점검·관리조직 구성·운영이 미비

※ 부처별 보조금 관리조직 구성·운영 실태 점검결과 (‘15~’17년, 36개 부처 대상)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100억 이상 또는 부정수급 우려 보조사업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재량 구성 → 농림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에서 구성·운영 중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TF’ 등 일부부처는 보조금별 자체점검조직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공모 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경우 의무 구성 → 복지부, 고용부 등 18개 부처에서 구성·운영 중

○(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부정수급자 명단공표를 위해 의무 구성 → 경찰청, 교육부 등 4개 부처에서 구성·운영 중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부정수급자 발생시, 제재부가금 산정 등 심의를 위해 재량 구성 → 경찰청, 고용부 등 6개 부처에서 구성·운영 중

- (총괄기관)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15년 설치)도 부처별 부정수급 발생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 등 총괄적 통계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등 측면에서 아직 미흡

*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따라 기재부 산하에 설치, 보조사업 관련 주요정책 결정 및 제도개선,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운영 등의 기능 담당

③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

-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 관련 절차(예산편성·집행 정산, 평가) 및 원칙(용도의 사용금지, 재산 처분의 제한 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보조금 관리 법령과 전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에 한계

◆ 개선 필요사항

- ①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검증기능 보완 및 공적정보 연계 확대
- ② 소관부처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
- ③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집행·점검 등 현장관리 측면

① 소관부처 및 보조사업자·수급자 등의 관심 부족

- (소관부처) 복지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다수 부처는 보조금 집행 이후의 목적 외 사용, 수급자격 변동, 비용 과다계상 등 일선현장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
- (보조사업자·수급자 등) 도덕적 해이 만연,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으로 부정수급 지속 발생

② 부정수급 점검·단속기관 간 연계 미흡

- 부정수급 점검·단속은 소관부처, 검찰, 경찰,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중복점검 등 부정수급 단속의 비효율 발생 여지

* 총괄관리기관(기재부)과 점검·단속기관(각 부처, 검경 등) 간 부정수급 관련 정보공유체계 미비

③ 보조사업 전수에 대한 점검·단속의 한계

- 보조금 수급자 및 보조사업자 수에 비해 현장 조사 및 확인인력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가정방문 등) 부족

* 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연간 5%만 현장조사가 가능한 실정('17년)

◆ 개선 필요사항

- ①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점검·관리노력 제고 및 국민인식 전환
- ② 점검·단속기관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상시점검프로세스 마련
- ③ 지역주민-현장공무원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신고·감시체계 구축

Ⅲ.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목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방향

-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제도와 시스템 정비
- ◆ 부정수급에 대한 중첩적인 점검·감시체계 구축
- ◆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중점
추진
과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선
- ② 보조사업 관리조직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③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3중 점검·감시
체계 구축

- ① (시스템 검증)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
- ② (점검·단속)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추진
- ③ (주민참여 감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감시체계 운영

부정수급 점검
강화

- ① 부정수급 빈발 분야 무작위 표본·전수조사
- ② 보조사업 운영기관의 점검노력 제고

신고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

- ①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 ②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1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 부정수급 검증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선
- 부정수급 점검·관리를 위한 관련 조직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선

□ 보조사업 단계별 검증기능 보강

- 보조사업 관리 단계별(선정-집행-사후관리)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검증기능 개선

⇒ '17년 보조금 집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 : 사전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DB 추가 구축

△집행 : 부정수급 징후 자동알림기능 추가

△사후관리 :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수급자격 등 변동알림기능 등 추가 구축('18.상반기),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정보 공시

* 현재 운영 중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50개 패턴을 '18.1월까지 정교화 추진,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검증기능 강화

구분	현재 기능	추가 기능
선정 단계	▶ 현재 공모형 사업에 대해서만 자격검증 가능	▶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자격검증을 위해 DB 추가 구축
집행 단계	▶ 가격적정성 및 중복수급 검증 ▶ 거래 증빙 검증	▶ 부정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자동알림기능 추가
사후관리 단계	▶ 사후 부정수급 모니터링 (50개 패턴 적용) ▶ 중요재산 변동 모니터링	▶ 사후 부정수급 모니터링 정교화, 적발율 제고 ▶ 소득변동·사망 등 변동시 변동알림기능 추가 ▶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정보공시

□ 부정수급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보다 정교한 보조사업자·수급자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료를 지속 발굴하여 '시스템과 연계' 추진

* 현재, 고용보험시스템, 행복e음, 국세청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건강보험통합관리시스템 등 360여개 시스템과 정보 연계 중

⇒ 현재 41종인 자격검증 공적자료를 53종으로 확대(12개 추가*) 추진('18년)

*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 보험 등

① (기초생활보장*)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보험, 금융거래 내역(특이거래), 기부금정보 등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보 추가 연계 ('18.하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자 163만명('16년), 예산 10.6조원('18년)

※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본 자료연계 필요성

- 자동차 보험 : 타인명의, 리스·렌트의 경우, 자동차 보유정보 확인 곤란
- 금융거래 : 3개월 평균잔액만 확인이 가능하여 시스템상 검증 불가
- 기부금 : 기부금 모집 정보에 대한 확인 곤란

⇒ △자동차 보험 : 국토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 연계 추진

△금융거래 : 금융기관 협의, 고액 입금정보 등 추가 연계

△기부금 : 기부금품법 개정*과 병행하여 기부금 모집 정보 연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 (현재 행안위 계류 중)

②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자격 및 자격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비자 등 관련정보 추가 연계 ('18.하반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이용자 69천명('17년 기준), 예산 6,757억원('18년)

⇒ 장애인활동지원법(42조) 개정으로 **관련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외국인 인력의 체류 비자 종류 및 유효기간 관리 정보(법무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급여정보(보훈처) 등

② 보조사업 관리조직의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보조사업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소관부처) 소관부처*의 보조사업 점검 강화를 위해 현재 재량 사항인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을 의무화

* 36개 기관 대상 : 23개 부(기재부, 고용부 등), 2개 처(보훈처, 식약처), 10개 청(산림청, 농진청 등), 기타 1개 기관(민주평통)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3조) 개정 ('18.1.2 개정)

- (지자체)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지정) 유도

⇒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지원 ('18.상반기)

* 시·군·구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기능을 부여하여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 실시 후 시·군·구에 처리 요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 내실화

- (부정수급 관리 TF)*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지원·보좌를 위해 설치 ('18.3월)

* 기재부의 보조금시스템 관리단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간사·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 TF는 부처별 부정수급 현황 및 문제점,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연2회)

- (부정수급 관련 지침 제·개정) 부정수급 처리 업무절차(점검·적발·환수 등)와 현장조사시 적용할 공통 체크리스트 마련 ('18.상반기)

* 현재 기관별(기재부, 검·경, 권익위)로 각기 다른 부정수급 분류기준도 통일

③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

-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하여 **별도 개별법 제정 추진**
 -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 가족관계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 등
 - 차상위 기관(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국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권한 부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환류체계 강화***
 - * 예) 보조금 정산결과 및 부정수급 상시점검 전담조직의 활동결과 등을 보고받아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심의시 반영
 -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1억원)**을 국가 수준(2억원)으로 **상향 추진**

⇒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18.하반기)

※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 주요내용

국가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제정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43개조)	지방재정법 (10개조항)	(가칭)지방보조금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신청, 조건, 결정, 통지, 취소, 변경 등 ▪ 수행상황 점검, 평가,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절차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수행상황 모니터링, 점검, 실적보고, 정산, 평가 등 관리방법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시스템과 연계 ▪ 보조사업자 등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제공·수집·활용 ▪ 보조사업 내역 공개 (사업자, 금액, 내용 등)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보조금반환, 환수, 제재부가금, 강제징수, 명단 공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결정의 취소, 벌칙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강제이행 근거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대응하는 (가칭)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구축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효과

- **지자체** :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용도외 사용여부 등 검증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공모, 집행, 정산 등 표준 회계절차를 수행하고, 보조금 전용계좌로부터 실증빙을 기반으로 자금 수령
- **주민**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수급·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통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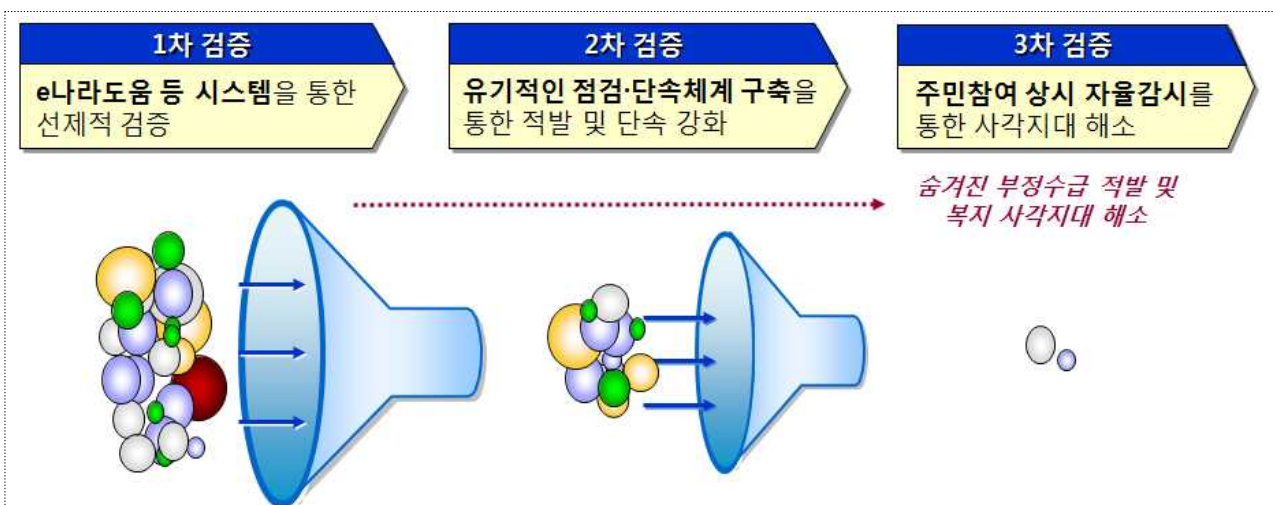
- 지방보조금 시스템은 **e호조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구축

- * △e호조 :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 신청·정산·사후관리 등 통합관리

⇒ 시스템 구축 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국고 및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18~'21년)

2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 ① (시스템 검증)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선제적인 부정수급 검증
- ② (점검·단속) 관계기관 간 유기적 점검·단속 추진
- ③ (주민참여 자율감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신고감시체계 구축



①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검증의 실효성 확보

○ 검증기능 강화,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해 개선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추진

- (자료입력 의무화)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관련 정보에 대한 'e나라도움' 입력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제출 의무화 추진 ('18년 상반기)

* 부정수급 내역·금액, 부정수급자 명단, 재재부가금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5조) 개정 ('18년 상반기)

- (e나라도움 교육강화) 'e나라도움'에 추가된 신규기능(부정수급 관리, 정보공개 등) 중심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확대

* 교육현황 : ('16년) 244회, 24천명, ('17년) 974회, 88천명, ('18계획) 1,020회

⇒ 보조사업 관리·집행 등 업무별 교육과 함께 부처·지자체·민간 등 기관별 맞춤형 교육* 및 상설학습체계 구축 ('18.상반기)

* 유형별(중앙·지자체·공공민간), 수준별(기초·전문·집중과정) 교육과정 세분화

② 유기적인 상시 점검·단속 추진

○ (역할분담)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점검을 활성화하고, 중복점검 등 비효율을 배제하기 위해 보조금 운영기관(부처·지자체)과 점검·관리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 △(부처·지자체) 의무화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통해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
△(검·경) 부처·지자체의 감사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숨은 비리' 집중 발굴 단속
△(부패예방감시단) 부처간 연계 또는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권익위) 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신고내역 분석자료 관계기관에 제공 등

○ (정보공유) 기관별 점검결과·조치사항 등을 e나라도움에 입력·공유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일관적 대응을 위해 유형별 사례집 보급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간 유기적 점검·단속으로 적발 (연중)

③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감시체계 운영

○ (국민감시단* 운영)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별도 구성, 예산낭비와 부정수급 감시 추진 ('18.6월)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나(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지자체별 국민감시단은 미구성

** 지자체 여건에 맞게 국민감시단 구성(지방예산·재정관련 단체, 마을세무사,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퇴직공무원 등 활용)

○ (주민대표기구 활용)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 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및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과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연중)

* 예산편성 관련 활동시기(7~10월) 외의 시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홍보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활동 유도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배포 시 반영)

⇒ 주민참여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

참고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사례)

□ 사례① : 수급자 부당수령 (재산·소득 허위 신고)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기부금품 모집 등을 통해 많은 자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입금된 돈을 즉시 타인명의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기초생활 보조금 수급 자격 유지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

- ① (시스템 검증) e나라도움에 추가 연계된 정보(최고입금액 등 특이거래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를 통해 숨겨진 자산 적발 ⇒ 신청단계에서 선정 배제
- +
- ② (점검·단속) 부정수급 빈발분야로 '부패예방감시단'과 관계부처 합동 집중 단속 추진, 무작위(Random) 심층점검을 통해 적발
- +
- ③ (주민참여 감시) A씨의 급격한 생활수준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자치회 위원, 이장 등 지역주민의 제보를 통해 적발

□ 사례② : 보조사업자 허위 인력 계상

- B업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3명을 청장년인턴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청장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

- ① (시스템 검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험자격 관련 직장정보 등)를 통해 실제 고용여부 확인 ⇒ 허위인력시 보조사업자 자격 박탈
- +
② (점검·단속) 고용부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이 불시 현장점검, 허위 계상 적발
- +
③ (주민참여 감시) "부정수급 = 범죄"라는 국민인식 제고를 통해 B업체에서 일하는 내부직원이 고용부, 권익위 등에 제보하여 적발

□ 사례③ : 보조사업자 정산서류 조작 (허위 영수증)

- C 농업인은 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물품단가를 부풀린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여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 ① (시스템 검증) e나라도움을 통해 물품구매단가 정보를 확인하여 평균시세와 비교 ⇒ 허위영수증 확인시 보조금 환수 및 보조사업자 자격 박탈
- +
② (점검·단속) 지자체의 부정수급 점검 전담부서 또는 행안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물품구매여부 및 실제 지불금액 확인
- +
③ (주민참여 감시) 부정수급 풍문을 들은 시·도별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원이 농식품부, 권익위 등에 제보하여 적발

3

부정수급 점검 강화

-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무작위 표본·전수조사 추진
- 부처·지자체의 부정수급 점검·근절 노력 제고

① 부정수급 빈발 분야 무작위 표본·전수조사

- (점검목표) 담당공무원, 보조사업자·수급자 등에게 모든 보조금 대상으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부정수급 예방
- (점검방식) '부패예방감시단' 중심 부정수급 빈발·우려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점검 추진 (연중)
 -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점검* 후,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 실시
 - * 보조금 전달체계 전반(소관부처·시·도·시·군·구·보조사업자·수급자)에 대한 점검
- (점검대상)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중심으로 다각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적시성 있는 점검과제(특정사업) 선정
 - * 예)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 △농림·수산 분야 : 농어촌 관련 보조금, 농지기금 등
 - △고용·노동 분야 : 고용안정자금, 실업급여 등
 - △교육·환경 분야 :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초 시설 등
- (결과조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 * △One Strike Out :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법 제31조의2)
 - △제재부가금 :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법 33조의2)
 - △명단공표 :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법 제36조의2)
- 업무소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징계하고, 조치결과는 대국민 공개 추진

< 참고사례 :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점검 >

- ◆ (점검개요) 무작위로 지자체 10곳*의 농어촌민박 4,65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하여,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 적발 ('17.6월)
 - * 전국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4,246개 ('15년 기준)
 - 위반 유형은 ①불법용도 변경(18.2%), ②연면적 및 동개수 초과(7.8%), ③실거주 위반(6.9%) ④무허가 물놀이시설(17.5%) 등
 - ◆ (결과조치)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불법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고발 요청하고, 불법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용자받은 108억원은 전액 회수 중
- ⇒ 표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 ('17.10~11월)

② 보조사업 운영기관의 점검 노력 제고

□ 소관부처 : 연간 점검계획 수립·추진 의무화

- (연간계획 수립·점검)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통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 (연1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3조) 개정 ('18.3월)

- (국무회의 보고)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각 부처의 부정수급 관리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

*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운영실적 등 보조금 관리노력 △부정수급 환수실적 등 관리 적정성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

※ 정부업무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분석한 각 부처의 부정수급 관리실적을 국조실에 통보하여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가감점) 추진

-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재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 확대 (5점→ 10점)

* 기재부, '보조사업평가단'을 통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행

□ 지자체 : 시도 합동평가 반영 및 시군구 점검체계 구축

- 17개 시도별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지자체 합동평가는 부처·지자체·전문가 합동으로 지표개발 및 평가 실시, 민간전문가로 「합동평가단('17년 120명)」을 구성하여 평가

** 예) 부정수급 접수/처리실적,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

- '지자체 재정분석' 지표(3개분야 22개 지표)에 보조금 관리실적을 감점요인으로 반영

-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수시 감사 실시

4

신고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

-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집중 신고·홍보기간 운영 등을 통한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①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 (신고포상금 등 홍보) '신고포상금'과 '신고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관심도 제고 및 자율신고 독려

-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집중 홍보

* △부패방지법상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보조금법상 반환금액의 30% 범위 내에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연중 상시 홍보하되, 전화·인터넷·앱·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함을 강조

- ▶ 전화 : ☎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 ▶ 인터넷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 ▶ 앱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App
- ▶ 대면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 등

- (집중 신고·홍보기간 운영) 매년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 기간을 운영, 지역주민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독려 ('18.상반기)

-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 신고 유도를 위해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부가금 부과 등 처벌 사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등 홍보

* 동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모바일용 연성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및 SNS 공유 확산,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 게시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 조성 및 참여 확대 유도

-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급액 기준 등 신고포상금 표준안 정비 및 포상금 상한액 인상 검토 ('18년내)

* 현재, 신고포상금 부여 관련 부처별 공통기준으로 적용될 표준안 부재

- (공익신고자 보호)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홍보 강화 (연중)
 - *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 등),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법률(복지부) 등

②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부정수급 정보공개) 'e나라도움'을 찾는 주민*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자 명단 등 공개
 - * 현재, e나라도움 '나의 보조금' 포탈을 통해 성별·연령·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검색·확인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유형별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사례(5배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공개·홍보
- (부처별 매체 활용) 관련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전략 마련 및 범부처 협업홍보 독려, KTV·위클리공감 등 보유 매체도 적극 이용 (연중)
 -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공공기관 홍보협의회 등
- (지자체 협조) 지역 신문사, 방송 및 지자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리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연중)

IV. 향후 계획

□ 세부 과제별로 차질 없이 시행

- 세부이행계획(참고)에 따라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행·관리
 - * '18년 점검계획 수립(각 부처), 집중점검계획 수립(부패예방감시단) 등 ('18.1월중)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과제 이행현황을 지속 관리 (반기별 점검)
 - 부정수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
 - * 출연금·사회보장기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금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 추진 등

□ 부정수급 상시점검체계 가동

-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및 17개 시·도별 '부정수급 전담조직'을 통해 연간 계획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점검 실시
-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합동·기획점검 실시
- 읍·면·동 단위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참여 자율신고를 활성화

* 보조사업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도 발굴도 병행

참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세부실행계획

단계별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1-1. e나라도움 개선	통합관리시스템 사후 모니터링 정교화 * 시스템 권한설정 및 교육, 부처 의견수렴, 패턴결과 수정	'18.1월	기재부	전 부처	
		사업별 수급자격 검증 DB 구축	'18.4/4	기재부	전 부처	
		수급자 자격 자동알림 기능 추가 * e나라도움	'18.2/4	기재부	전 부처	
		모든 공적자료 통합·연계 확대 * 금융재산 연계정보,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공적자료 연계 등	'18.4/4	복지부 기재부	관계 부처	
	1-2. 보조사업 관리조직 정비·운영 내실화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의무구성	'18.1/4	전부처	-	
		시·도별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18.2/4	행안부	지자체	
		부정수급 관리 TF 구성·운영	'18.1/4	기재부	관계 부처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마련	'18.2/4	기재부	전 부처	
	1-3.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안 마련	'18.4/4	행안부	지자체	
		(가칭)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추진	'18.4/4	행안부	지자체	
		- 구축 및 시범운영	'19.4/4			
	- 전국 확산 및 보급	'20.4/4				
	- e나라도움과 연계	'21.1/4	행안부	기재부		
	3중 점검·감시 체계 구축	2-1. 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e나라도움에 부처별 부정수급 정보 입력	'18.2/4	전부처	-
			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 e나라도움 정보공개 포털에 부정수급 관련 정보 탑재, 대국민 공개 추진	'18.1/4	기재부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실시			'18.연중	기재부	전 부처	
e나라도움 온라인교육 구축 및 운영			'18.4~12월	기재부	-	
e나라도움 교육서버 이관 및 구축			'18.4~7월	기재부	-	
e나라도움 매뉴얼 정비 및 기능개선			'18.1/4	기재부	-	

단계별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2-2. 유기적인 상시점검· 단속 추진	부처별 부정수급 점검 추진	연중	전부처	-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집 발간	'18.2/4	전부처	-	
	2-3. 주민참여 자율감시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별 국민감시단 구성 추진	'18.2/4	행안부	지자체	
		지방재정법 개정 * 주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18.4/4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홍보, 제보방법 안내 실시	연중			
	부정수급 점검 강화	3-1. 부정수급 빈발분야 표본· 전수조사	부정수급 다빈발 분야 집중점검계획 수립	'18.1/4	국조실	관계 부처
4대 분야 집중점검 실시			'18~'19	국조실	관계 부처	
3-2. 보조사업 운영기관 점검노력 제고		부처별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	'18.1월	전부처	-	
		정부업무평가지침/보조금법령 개정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노력 배점 추가	'18.1/4	국조실 기재부	전부처	
		보조사업 연장평가 항목 중 부정수급 관리항목 배점 확대	'18.1/4	기재부	-	
		부정수급 관련정보 예산실 통보	연중	기재부	-	
		지자체 합동평가에 부정수급 관리지표 추가	'18.2/4	행안부	지자체	
		시·군·구 보조금 점검체계 구축	'18.2/4	행안부	지자체	
신고 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		4-1.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 운영	연중	권익위	전부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18.2/4	전부처	-
	신고포상금제도 확대방안 모색		'18.4/4	기재부	전부처	
	4-2. 홍보강화	관계 부처 콘텐츠 제작지원, 문체부 보유매체 활용 홍보지원, 공공기관 매체 협업 홍보지원	연중	문체부	전부처	